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14
----------	-----

2017. 10. 24(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봉순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7년 9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10월 13일

-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봉순 의원)

가. 제안사유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도지사가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변경절차를 생략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우수건축자산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 도지사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 우수건축자산, 한옥건축, 한옥마을조성 등에 대한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호)

- 금번 제정조례안은 한옥·근대건축물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충청북도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의 보존·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 첫째, 안 제4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지원 대상 사업자)에서는 도지사가 건축자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건축자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양성하고 한옥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둘째, 안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에서는 도지사가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정함으로써 건축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셋째, 안 제8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부터 안 제10조 까지에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건축자산 진흥구역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넷째, 안 제12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에서 도지사가 한옥 건축·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을 신축·개축하거나 한옥 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활성화와 우수한 한옥건축의 보급·확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다섯째, 안 제15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서는 도지사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금번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우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714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359회)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9월 29일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박봉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4
----------	-----

발의연월일 : 2017년 9월 29일

발 의 자 : 박봉순, 최광옥, 연철흙,
박한범, 이연구, 임병운,
이종욱

1. 제정이유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도지사가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변경절차를 생략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우수건축자산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 도지사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을 규정하고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 우수건축자산, 한옥건축, 한옥마을조성 등에 대한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
- 나. 예산조치 : 관계없음.
- 다. 입법예고 : 2017. 9. 20 ~ 9. 25(5일간)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건축자산 및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4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지원 대상 사업자) ① 영 제6조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② 충청북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사업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 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 법 14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방안

3. 특례적용 및 미적용인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제7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할 의견의 중요사항) 영 제 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내용 중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군수가 공고 및 열람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 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충청북도 소속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축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협의회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된다.
-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자산 진흥 관련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도지사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을 신축(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한도액) ① 제12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 한옥신축 등 총공사비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2.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다른 대상자에 우선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침에 따른다. 단,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른 대상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2조 중 한옥마을의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제1항 각 호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이미 지원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다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한옥을 신축한 경우 : 10년

2. 그 밖의 경우 : 5년

제1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시기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지원액을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한다.

제15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유 건축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건축문화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제16조(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관련법령 발췌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건축기본법」제18조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②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 완화 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 내용(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우수건축자산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건축 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등에 참여하여 시행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 시·도지사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자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①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장 변 상 천